



부 산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2019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 시 [REDACTED] 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6. 19.
판 결 선 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61,47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61,749,990원'은 오키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양어업, 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3. [redacted] 선박인 동력선 [redacted]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를 4,222,529,403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표준세율의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43,069,790원, 농어촌특별세 12,667,580원, 지방교육세 168,900원의 합계 55,906,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2012. 7. 1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 허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4. 4. 15.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61,479,9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원양어업선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원양어업선박'의 구체적 의미 내지 요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외수역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원고는 원양어업허가 정수 제한 등으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으로 2011. 3. 14.부터 2012. 3. 13.까지 원양 시험어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2012. 7. 13.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시험어업에 투입한 것은 원양어업허가를 받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위 시험어업은 원양어업과 다름이 없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하여 원양어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직후인 2011. 3. 11. [redacted] 부에 이 사건 선박의 시험어업신청서를 제출하였고, [redacted] 해군은 2011. 3. 16. 조업구역을 FAO 34, 47 해구 및 SEAFO 관할수역(대서양)으로 하고, 조업기간을 2011. 3. 14.부터 2012. 3. 13.까지로 하는 시험어업을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12. 6.경 남극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원고 소유의 [redacted] 호가 기관 수리로 장기간 조업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으로 위 조업을 대신하기로 하고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원양어업허가를 신청하였고, 2012. 7. 13. 위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외국향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향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는 위 외국향로취항용 선박을 '원양어업선박(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경감 대상이 되는 '원양어업선박'이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취득 당시 허가를 받거나 취득 당시 허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은 선박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직후 시험어업승인을 받았을 뿐, 그 취득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지난 2012. 7. 13.에 비로소 원양어업허가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원양어업허가와 시험어업승인은 그 내용과 절차 및 방법이 서로 달라 시험어업의 승인을 원양어업허가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선박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2-0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

판사 인진섭

판사 김두홍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1. 3. 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른 소형선박은 제외한다)

4) 수입에 의한 취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3. 29. 법률 제10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②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0을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운송용과 외국항로취항용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선박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1. 3. 29. 대통령령 제22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등)

- ① 법 제64조 제2항에서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에만 취항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다. 원양어업선박(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원양산업발전법(2013. 7. 30. 법률 제11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양산업"이란 제2호의 원양어업과 제3호의 원양어업관련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2. "원양어업"이란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수역에서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대한민국국민이 납입한 자본금 또는 보유한 의결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6조(원양어업허가 및 신고)

- ① 원양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어업 및 연구어업·교습어업)

- ① 해외수역에서의 새로운 어구·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어업(이하 "시험어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어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시험어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조세에 대한 특례)

정부는 원양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끝>